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2. 13.(목) 10:00

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67호
- 나. 제 출 자 : 김용술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2. 제안이유

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'24.11.1. 시행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.
- 나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.
- 다.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4조, 안 제5조).
- 라. 노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등, 보험가입 및 예산지원 등(안 제6조~안 제8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내실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.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' 24.11.1.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함.

2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.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

3)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4조, 안 제5조).
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·보급하고,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책무로 규정하고,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4) 노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등, 보험가입 및 예산지원 등(안 제6조~안 제8조).

-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물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규정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 노인일자리법)

[시행 2024. 11. 1.] [법률 제19814호, 2023. 10. 31., 제정]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·보급하고,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(이하 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, 상담 및 교육,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, 노인친화기업·기관,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(이하 “노인생산품”이라 한다)의 판매·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, 박람회,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노인생산품 우선구매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9조(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·지원 대상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홍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3조(참여자 보호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